

창원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5795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57957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단27774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경석

피고, 피항소인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경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엄영선

변론 종결2021. 3. 25.

판결 선고2021. 4. 15.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단2777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2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E 사이에,
나. 별지 목록 제25항 내지 제4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과 E 사이에,
다. 별지 목록 제42항, 제43항 기재 각 부동산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D과 E 사이에
각 2017. 8. 28.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3. E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2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5항 내지 제4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42항, 제43항 기재 각 부동산중 1/4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에게, 피고 B는 709,050원, 피고 C은 30,7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이 법원"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 고친다.
-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 14행의 "증인 E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당심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의 "또한 위 2014. 4. 14.자 차용증(갑4의 2)에 기재된 채권자 원고의 휴대폰 번호는 J인데, 위 번호 역시 차용증 작성일 이후인 2014. 10. 6. 비로소 원고 명의로 개통되었다."를 삭제한다.

라.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2016. 8. 16. 비로소 원고 명의로 개통되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2014. 4. 14.자 차용증과 위 2016. 4. 30.자 차용증은 그 작성일자가 약 2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위 각 차용증은 그 작성 형식과 내용, 채무자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지 않고 자필 서명이 있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2018. 7. 24.자 차용증(갑4의 3)에는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그 차용증의 작성일 이전인 2017. 12. 20.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18. 7. 24.자 차용증 하단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표시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득관

판사서민아

판사석동우

별지